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마지막 걸음 내디뎈다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서 기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정 발효를 위해 3월 4일(월) 가입서를 기탁했다.

* 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21.1월 발효)

우리나라는 DEPA의 최초 가입을 위해 6차례의 협상을 거쳐 '23.6월에 실질 타결하였으며, '23.9월 DEPA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가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밟았다.

우리나라는 협정문 내 가입규정에 따라 ①가입서를 기탁처(뉴질랜드)에 기탁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또는 ②모든 DEPA 당사국들(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이 가입 조건의 승인에 대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기탁처에 통보한 날 중 더 늦은 날에 DEPA 협정의 당사자가 된다.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뉴질랜드, 칠레와는 기존에 양국 간 체결된 FTA 상 전자상거래 규범이 부재했던 만큼, 이번 DEPA 가입을 통해서 한국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DE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은 3.4일부로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FTA강국 코리아(www.ft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붙임】 1. DEPA 협정문 구조

2. DEPA 조항별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디지털경제통상과	책임자	과 장	고장원 (044-203-4880)
		담당자	사무관	박성배 (044-203-4885)

붙임 1

DEPA 협정문 구조

모듈	내용	세부조항
1	최초규정 및 일반 정의	범위(1.1), 다른 협정과의 관계(1.2), 일반정의(1.3)
2	비즈니스와 무역 원활화	정의(2.1), 종이서류 없는 무역(2.2), 국내 전자거래 체계(2.3), 물류(2.4), 전자송장(2.5), 특송화물(2.6), 전자지급(2.7)
3	디지털제품의 대우 및 관련 사안	정의(3.1), 관세(3.2),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3.3),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ICT 제품(3.4)
4	데이터 사안	정의(4.1), 개인정보 보호(4.2),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전송(4.3), 컴퓨터 설비 위치(4.4)
5	보다 폭넓은 신뢰 환경	사이버보안 협력(5.1), 온라인 안전 및 보안(5.2)
6	기업과 소비자 신뢰	정의(6.1), 스팸메시지(6.2), 온라인 소비자 보호(6.3),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6.4)
7	디지털 신원	디지털 신원(7.1)
8	최신 동향 및 기술	핀테크 협력(8.1), 인공지능(8.2), 정부조달(8.3), 경쟁정책 협력(8.4)
9	혁신과 디지털 경제	정의(9.1), 목적(9.2), 자유 이용 저작물(9.3), 데이터 혁신(9.4), 정부 데이터 공개(9.5)
10	중소기업 협력	일반원칙(10.1), 디지털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10.2), 정보공유(10.3), 디지털 중소기업 대화(10.4)
11	디지털 포용	디지털 포용 (11.1)
12	공동위원회와 연락처	공동위원회의 설치(12.1), 공동위원회의 기능(12.2), 의사결정(12.3), 공동위원회의 절차규칙(12.4), 협력과 협정의 이행(12.5), 연락처(12.6)
13	투명성	정의(13.1), 공표(13.2), 행정절차(13.3), 재심 및 불복청구(13.4), 통보 및 정보제공(13.5)
14	분쟁해결	정의(14.1), 목적(14.2), 적용범위(14.3), 주선 및 조정(14.4), 중개(14.5), 중재(14.6), 분쟁해결절차의 선택(14.7)
		부속서 14-가 모듈14(분쟁해결)의 범위
		부속서 14-나 중개 매커니즘
		부속서 14-다 중재 매커니즘
15	예외	일반 예외(15.1), 안보 예외(15.2), 와이탕이 조약(15.3), 건전성 예외와 통화 및 환율정책 예외(15.4), 과세 예외(15.5), 국제수지 보호조치(15.6)
16	최종규정	기탁처(16.1), 발효(16.2), 개정(16.3), 가입(16.4), 탈퇴(16.5), 정보공개(16.6), 비밀유지(16.7), 부속서 및 각주(16.8), 전자서명(16.9)
	부속서 1	4개 조항에 대해서는 이 협정에 따른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가 창설되지 않는다고 양해 -> 개정의정서에 따라 효력 중단 - ▲ 디지털제품의 비차별 대우, ▲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ICT제품, ▲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전송, ▲ 컴퓨터 설비의 위치
	개정 의정서	1.1조(범위)의 개정(1), 3.1조(정의)의 개정(2), 3.3조(디지털제품 비차별 대우)의 개정(3), 3.4조(암호기법을 사용한 ICT제품)의 개정(4), 4.3조(국경 간 정보전송)의 개정(5), 4.4조(컴퓨터설비 위치)의 개정(6), 14.3조(분쟁해결 적용범위)의 개정(7), 일반조항(8)

① 전자상거래 원활화

- ① **(종이 없는 무역)** 전자화된 무역행정문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무역 행정 관련 데이터 교환 및 데이터 교환 시스템 구축 협력
→ 전자무역문서 활용을 촉진하여 문서처리·물류비용 절감, 통관 시간 단축 등 효율성 증진
- ② **(특송화물)** 투명하고 일관된 신속통관 절차 마련 및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물품 기준(최저 면세한도) 설정
→ 대부분(99% 이상) 특송화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신속한 통관 및 면세를 제공하여 B2C(직구) 거래지원 강화
- ③ **(전자지급)** 효율적이고 안전한 국경간 전자 지급(electronic payment)을 지원하고, 결제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표준 채택 등 협력
→ 국내 전자결제 시스템(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상대국에서도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 가능

② 신뢰가능한 디지털환경

- ①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도입하고, 개인정보를 보호 하면서 국경간 정보이전을 촉진하는 매커니즘 도입 및 확장 노력
- ②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기만 행위 방지 및 소비자 구제를 위한 소비자보호 법제를 도입하고, 원활한 법집행에 협력
- ③ **(스팸메시지)** 수신자의 사전동의 및 수신 거부방안 마련 등을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한 피해자 구제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
- ④ **(안전한 보안 환경)** 디지털 비즈니스 기반이 되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

③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 ①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국경 간 데이터(개인정보 포함) 이전을 허용

※ 단,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한 조치는 목적달성에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가능

→ A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B국 지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본사로 자유롭게 이전하여, 데이터 기반 혁신 및 가치 창출 도모 가능

- ②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데이터 처리·저장 서버 등 컴퓨터 설비를 데이터를 획득하는 현지에 두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

※ 단,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한 조치는 목적달성에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가능

→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시 현지에서 수집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서버 등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없어 진출 비용 절감

- ③ **(디지털제품 비차별)**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해 자국 제품과의 차별적 요건 부과를 금지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 여건 확보

- ④ **(암호기법 ICT 제품)**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해외 ICT 제품*에 대해 암호기술 공개, 특정 암호기술 사용 등 요구 금지

* 케이블 TV, 디지털 셋탑박스, 스마트 미터기 등이 해당되며, 상업용 제품에 한정

- ⑤ **(정부데이터 공개)** 정부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기회 제공

④ 디지털 신기술 등 협력 확대

- ① **(AI 협력)**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체계 개발 및 도입에 협력

- ② **(핀테크 협력)** 핀테크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핀테크 솔루션 개발, 스타트업 기업 역량 강화 등 기업 중심의 협력 증진

- ③ **(디지털 ID)** 자국 디지털 ID(모바일 신분증 등)를 상대국에서 상호 사용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및 기술 표준 동조화를 위해 협력

- ④ **(중소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제 참여 및 플랫폼 활용 확대를 장려하고, 기업 간 연결을 위한 디지털 SME 대화 개최